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8. 28.(금) 10:00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24,142,373천원(일반 709,767,406천원 특별 14,374,967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계		724,142	698,776	527,952	143,761	27,063	25,366	
일 반 회 계		709,767	685,798	515,105	143,697	26,996	23,969	
특 별 회 계		14,375	12,978	12,847	64	67	1,397	
	의료급여기금	495	449	448	1	-	46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890	461	461	-	-	429	
	주 차 장	12,990	12,068	11,938	63	67	922	

4. 도시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도	시	30,314,699	26,361,210	3,953,489	15.00 %
	주	470,978	429,926	41,052	9.55 %
	안	10,070,266	6,850,732	3,219,534	47.00 %
	도	997,614	1,015,042	△17,428	△1.72 %
	건	417,032	432,315	△15,283	△3.54 %
	공	18,358,809	17,633,195	725,614	4.12 %

5. 도시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부	세	사	최	기	2
	서	부	업	종	정	차
	명	사	개	예	액	추
		업	요	산	(A)	경
		명		(A+B)		(안)
						(B)
1	안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및 교육실시 등 ⇒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축소 등 ⇒ 코로나19로 어린이대상 행사 취소 	24,526	30,632	-6,106
2	안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 방역활동 소모품 구입 및 코로나19 방역 홍보물 제작 등 ⇒ 코로나19로 자율방재단 워크숍 등 취소 ⇒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4,200천원) 	15,061	17,480	-2,419
3	안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매년1회 정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수시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국50:시50) ⇒ 코로나19로 안전한국훈련 축소 	6,400	7,760	-1,360

4	안 전 도 시 과	시설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관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축소 	10,244	35,107	-24,863
5	안 전 도 시 과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 실시 ⇒ 코로나19로 교육 축소 	38,081	78,851	-40,770
6	안 전 도 시 과	U-통합 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CCTV 배전주사용요금 및 전기사용료, 통합유지보수 용역 등 ⇒ CCTV 신규설치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사용요금 삭감 등 	579,870	604,865	-24,995
7	안 전 도 시 과	재난관리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코로나대응 사업비 반영(기금전출금) 	7,028,915	3,708,915	3,320,000
8	도 시 계 획 과	공공 디자인 발굴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자전거보관대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 ⇒ 코로나19로 주민회의, 실내전시 축소 	47,050	51,950	-4,900
9	건 축 과	건축민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건축심의 대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운영 ⇒ 코로나19로 건축위원회 워크숍 취소 	0	7,480	-7,480
10	건 축 과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상·하반기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건축학교, 체험 건축탐방 진행 ⇒ 코로나19로 어린이대상 행사 취소 및 상담건축사 워크숍 취소 	0	2,020	-2,020
11	건 축 과	금천 건축안전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 차량유지비 감액 	1,700	3,400	-1,700
12	공 녹 지 과	신규 새재미 어린이 공원 재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노후 놀이시설 개선 및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위 치 : 시흥1동 855번지 규 모 : 1,185.2㎡ 사업기간 : 2020. 9. ~ 2021. 9 	80,000	0	80,000
13	공 녹 지 과	신규 안양천 파크골프장 녹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2019년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라 녹지유지관리 	27,211	0	27,211
14	공 녹 지 과	신규 도시계획 시설 (공공공지) 결정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소규모 일반녹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지정계획에 따른 용역 실시 	30,000	0	30,000

6.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263억 6,121만원)에서 금회 39억 5,348만 9천원이 증액된 총 303억 1,469만 9천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27%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 안전도시과는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33억 2,000만원 증액 편성이며
 - 건축과는 건축 민원처리 외 2개 사업 1,120만원 감추경 편성이며
 - 공원녹지과는 호암 늘솔길 연장사업 외 4개사업 5억 4,721만 1천을 증액 편성함.
- 도시안전국의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과 하반기 필수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지속적인 행정력의 집중으로 코로나 사태의 위기 극복과 재난 안전 관리에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